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5월 | 2024/05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 확대

지난 PCT 뉴스레터 2023/10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서 수정된 부분들 보다 잘 표시하고 XML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출원 공개용 XML 렌더링 배열 시범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용지 하단 여백의 날인 대신 오른쪽 여백에 검은색 줄과 관련 규칙 및 날짜가 표시됩니다. 수정부분 렌더링으로 인해 처음에 XML 형식으로 제출된 출원과 페이지 번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출원 시 XML 에서 생성된 원래 페이지들이 PDF 문서로 제공되는 대체용지와 합쳐질 때 레이아웃의 일관성이 향상됩니다.

해당 시범시행은 2023년 10월부터 중국의 수리관청(RO/CN)에 XML 형식으로 제출되거나 XML 형식으로 변환된 국제출원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범시행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관련 관청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제사무국은 2024년 6월부터 일본의 수리관청(RO/JP)과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RO/IB)에 XML 형식으로 제출된 국제출원들로 시범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범시행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6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docs/circulars/2023/1656.pdf>

## PCT 정보 업데이트

###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여러 관청)

2024년 7월 1일부로, 국제출원료, 30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그리고 취급료의 USD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Fee Tables)에 나온 것과 같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http://www.wipo.int/pct/guide/en/))의 다음의 부속서들에 반영되었습니다.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Z, BH, BW, BY, BZ, CL, CR, DJ, DO, EA, EC, EG, GE, GH, HN, IB, IL, IN, IQ, JM, JO, KE, KG, KH, KZ, LR, MD, MW, MX, NI, OM, PA, PE, PG, PH, QA, RU, SA, SC, SV, SY, TJ, TM, TT, UA, UG, US, UZ, WS, ZM, ZW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CL, EA, EG, IN, PH, RU, US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4 년 7 월 1 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송달료 및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송달료:.....	USD	110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USD	55
항공우편 추가요금: .....	USD	11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2024 년 세계지식재산 보고서

2024 년 세계지식재산 보고서 “Making Innovation Policy Work for Development”(혁신정책에 따른 발전)는 인류의 혁신, 경제 다각화 및 산업 정책의 교집합을 파헤쳐 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가 지역혁신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입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보고서는 여러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나라들에서 광범위하고 성장하는 경제구조 기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과 창의성,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산업정책 입안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보고서와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web/world-ip-report>

### 유용한 도움말

#### 제 3 자 의견서(third-party observation) 및 그 효과

**Q:** 저는 긍정적인 국제조사 결과를 받았고 제 PCT 출원도 공개되었는데, 이제 와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제 3 자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해당 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까요?

**A:** 제 3 자 의견서는 다른 출원인, 경쟁자 또는 공중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청구된 발명이 새롭지 않거나(신규성 결여) 자명하다(진보성 결여)고 판단한 PCT 공개출원에 대해 제시한 의견(observations 또는 comments)을 의미합니다.

국제출원 공개 후 제 3 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28 개월까지 ePCT 시스템을 통해 국제사무국(IB)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각 제 3 자는 특정 출원에 대해 1 개의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건의 출원에 대해서는 10 개의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각 의견서에는 국제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 또는 우선일이 국제출원일 전인 특허문헌을 인용하는 인용문헌이 적어도 1 개, 최대 10 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용문헌은 각 문헌이 청구 발명의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수반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가급적 각 인용문헌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자는 선택에 의해 익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 3 자 의견서 서비스는 강력인증 없이 ePCT 에서 직접 이용하거나, PATENTSCOPE(<https://www.wipo.int/patentscope/en/>)에서 공개된 국제출원을 둘러보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법적 근거는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 제 8 부(Part 8)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형식과 의견서의 길이, 언어 등에 대한 해당 서비스 관련 추가 세부사항은 아래 사용자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epct/docs/epct\\_observations.pdf](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en/epct/docs/epct_observations.pdf)

국제사무국은 각 의견서를 확인하는데, 이는 단지 해당 의견서가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의 문제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견서의 실제적 내용의 유효성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의견서가 발명의 소유권(ownership), 산업상 이용가능성, 또는 개시 요건(sufficiency of disclosure)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의견서를 거절하고 제 3 자에게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가 수락되면 PATENTSCOPE 에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같은 섹션에 공개됩니다. 이 때, 해당 의견서만 공중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유로, 해당 의견서와 함께 업로드된 선행기술 문헌은 출원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해당 시), 그리고 지정 또는 선택관청에만 제공됩니다.

국제사무국은 이와 같은 의견서의 제출을 출원인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하고, 업로드 된 선행기술 문헌의 사본을 출원인과 지정관청 양측 모두에게 송부합니다. 국제사무국은 의견서와 인용문헌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ISA)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도 고려를 위해 송부하는데, 이는 해당 출원이 동 기관에 계류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국제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제조사기관에 제 3 자 의견서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조사 결과는 재검토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II 장 청구서(Chapter II Demand)<sup>1</sup>를 제출하시면 국제사무국에서 의견서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공하는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아직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견서를 고려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할 때까지 국제단계 동안에 해당 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하며, ePCT 에 강력인증으로 로그인 후 PDF 문서 유형 “제삼자 의견서에 대한 출원인 의견서”(Applicant Comments on Third Party Observation)를 업로드하시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의견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해당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PATENTSCOPE 에서 공중에 공개됩니다. 제 3 자가 우선일로부터 28 개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 개월의 답변 기간은 질문자께서 국내단계 진입 전에 그에 대응하고 해당 기간 내에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아래 설명과 같이 국내단계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sup>1</sup> (역주)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 II 장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사무국은 해당 우선일부터 30 개월이 만료된 후 즉시 의견서와 선행기술 문헌을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미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출원인들은 본인이 알게 된 관련 문헌을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공개진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관청에서는 국내단계 처리를 위해 해당 문헌을 고려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가로, 질문자께서는 비슷한 제 3 자 의견서 제도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내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내단계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 3 자 의견서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FAQ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ko/faqs/third\\_party\\_observations.html](https://www.wipo.int/pct/ko/faqs/third_party_observations.html)

또한, 아래 PCT 뉴스레터 2012/07-08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82012.html](https://www.wipo.int/pct/en/newslett/practical_advice/pa_082012.html)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홍수의 영향을 받은 출원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구제책**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2)**

**PCT 규칙 82 의 4.2 에 따른 통지(유럽 특허청)**

**이례적 휴무일**

인도 특허청 (첸나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PCT 정보 업데이트**

**EP 유럽특허기구 (팩스 사용 종료)**

**ES 스페인 (위치 및 우편주소)**

**PT 포르투갈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US 미국 (위치 및 우편주소, 수수료,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조사료 (여러 관청)**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중국어 자료